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고 포기 및 소송 종결 방침(서울고등법원 2014누58862)

다음 소송 사건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나, 검찰의 상고 포기 지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 1. 사건개요

가. 사 건 명 : 2014누588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당 사 자 : 원 고(피항소인) 백찬우 외 5명  
피 고(항 소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다. 소 가 : 6,957,640원

라.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마.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3.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건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바. 청구원인 : 원고들은 임차인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혹은 이를 추인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과세율 부과의 요건을 결한 것이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함.

### 2. 소송진행사항

- 2014.08.08 - 사건접수
- 2015.03.19 - 1차 변론기일
- 2015.04.23 - 2차 변론기일
- 2015.05.21 - 판결선고기일(항소기각)

### 3. 판결내용

가. 판결주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처분목록 순번1 백찬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820,501원'을 '1,820,510'원으로, 순번2 황영숙, 순번3 김현선에 대한 건물분 합계 각 '588,030원'을 각 '588,330원'으로, 순번4 황선애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946,210원'을 '1,946,060원'으로, 건물분 합계 '588,030원'을 '588,330원'으로, 합계란의 토지분 재산세 '13,905,060원'을 '13,904,910원'으로, 건물분 합계 '4,187,050원'을 '4,187,950원'으로 각 경정한다.

#### 나. 판시이유

1) 당해 건물을 임차 받은 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2) 노래천국'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단란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속칭 도우미를 불러주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1회 단속되었는데 유흥접객원을 상시 또는 상당기간 계속하여 고용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로서는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에서 허가받은 단란주점 영업에서 더 나아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4. 상고 포기 이유

- 원고들이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경찰에게 적발된 후인 2013. 1. 8.이고,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단전대차뿐만 아니라 차임연체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였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기각된 바, 이와 유사한 대법원판례를 참조한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 포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5. 행정사항

- 검찰보고(소송종결보고)
- 추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

붙임 1. 판결문 사본. 끝.

